

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
일부개정법률안
(김소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5312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2. 17.
발의자 : 김소희 · 박준태 · 박정훈
김기현 · 김형동 · 이현승
서천호 · 서일준 · 조승환
김상훈 · 추경호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유출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있지만, 외국에서 사용되게 할 목적을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대해 동일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최근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과 같이 단순히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한 경우에도 처벌이 강화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 처벌이 강화되도록 하여 국내 전략기술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15조 및 제50조).

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
일부개정법률안

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2호 중 “손해를 가할 목적으로”를 “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알면서”로 하고, 같은 조 제6호 중 “사용되게 할 목적으로”를 “사용될 것을 알면서”로 하며, 같은 조 제7호 중 “손해를 가할 목적으로”를 “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알면서”로 한다.

제50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“사용되게 할 목적으로”를 각각 “사용될 것을 알면서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<p>하거나 <u>사용되게 할 목적으로</u> 제15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 는 2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.</p> <p>③ ~ ⑤ (생 략)</p>	<p>-----<u>사용될 것을 알면서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③ ~ ⑤ (현행과 같음)</p>
---	--